

물 품 구 매 계 약 추 가 특 수 조 건

1.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제품의 규격 및 제시된 사양을 엄수하고 견본과 동일하여야 하며, "대학"의 물품 검수 이전에 제품 포장을 절대 개봉할 수 없다.
2. 납품하는 제품의 규격 및 사양이 "대학"에서 제시한 규격 및 사양과 상이하거나 규격(사양) 미달일 경우 "대학"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업체"는 제품 납품시 기존 기기는 분리하여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제품 설치 후 박스 및 포장재는 전부 반출 폐기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제품 설치 후 본교 양식의 '납품확인서' 및 '거래명세서' 에 해당 물품 인수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인수자는 반드시 물품을 사용하는 학과의 학과장, 행정부서는 담당직원이 인수자가 되어야 함).
5. 계약금액(입찰금액)에는 물품의 납품(설치 및 정상가동) 및 교육을 마칠 때까지 요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이며 계약 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반 비용 및 견적에 차이가 생겼을 경우에도 "계약업체"는 이에 대한 요구를 하지 못한다.
6.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후에도 대학의 차기 계약 시까지 계약 품목에 대하여 "대학"의 추가 요구 시 계약단가에 준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모델이 단종 되었을 경우, 기존 사양보다 높은 사양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7. 제품의 무상유지보수기간은 납품(검수) 후 1년으로 하여야 한다.(소모품 제외)
8. "대학"은 물품대금을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계약업체"에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9. 만약 상기 특약사항에 위배될 경우에 "대학"은 계약이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물 품 구 매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본교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매각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본교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 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관계법령)
7.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관계법령)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본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 부터 면허, 허가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

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 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 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본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에 해당되는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이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한 입찰
12. 제8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 공고번호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본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본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본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희망수량에 의한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우위자를, 시행령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은 당해물품의 품질등의 평가기준을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품질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⑧입찰서와 함께 품질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본교에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본교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물 품 구 매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대학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직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원광보건대학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 (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행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에 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대학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대학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대학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직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학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대학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12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대학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학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계산시 제외한다.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규격(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직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대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대학이 제시한 견본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상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관리세칙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대학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철,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음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 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 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대학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2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직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 및 상표)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대학이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대학이 정한 기간 동안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납품후 대학이 정한 기간 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직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직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 기일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대학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 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직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대학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 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 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 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써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대학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대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 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학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업수의무) ①대학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대학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요령(대학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시사 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 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 품 구 매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원광보건대학교(이하 "대학"라 한다)의 구매(또는 "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국가계약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인감증명서 첨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납품검사 및 검수) ①계약서("납품요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의 납품기한에는 물품의 검사 및 검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늦어도 소정납품 기한일자를 기산()일 전까지 검사 요청하여야 하고 검사완료 또는 검사증 발행일일 부터 2일 이내에 검수 요청하여야 한다.

②납품은 대학이 지정한 검사담당자의 검사를 받은 후 합격된 물품을 검사관이 검수(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검수를 함에 있어 별첨의 특수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체상금) ①대학은 계약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동 경과일수 매 1일에 대하여 해당 납품대금에 다음의 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실제검사 및 검수지연으로 인하여 납기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동 초과일수는 납품기한 경과일수에서 공제하되, 그 초과사유가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품의 제조 및 구매 : 1,000분의 3
2. 물품의 수리, 가공 및 용역 : 1,000분의 2.5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을 납품 기한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보완지시를 한 경우에는 보완지시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3.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구 분	지체일수 예시
지체일수 산 정	(1)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2)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보완지시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6일 지체 (3)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검사를 요청하여 20일에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4)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보완지시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10일 지체

제5조(단가계약) ①단가계약에 있어서는 대학이 기본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의거 납품하며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장소, 분할 납품 가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납품요구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연간구매 예상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한다.

③대학은 필요한 경우 연간 구매예상량의 10% 범위 내에서 동 예상량을 초과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동 한도량에 관계없이 이를 초과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

④1회 납품요구 최대량은 연간 구매예상량의 ()로 한다. 다만, 대학은 필요한 경우 10%까지는 초과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의 동의를 있을 경우는 동 한도량을 초과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⑤계약자는 납품기한 전이라도 대학으로부터 계약물자의 일부에 대한 분할납품 요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계약자는 제3항 및 제4항 단서의 경우와 이미 납품 요구한 수량중 미납품량과 당해 납품요구 예정량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산출된 계약보증금 또는 차액보증금이 이미 납부된 계약보증금 또는 차액보증금 해당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추가계약보증금 또는 추가차액보증금을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추가계약보증금 및 추가차액보증금은 납품완료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6조(원가계산 증빙자료 제출) ①계약자는 계약체결후 납품완료일 까지 대학이 요구하는 원가계산 및 사후검토관계 증빙자료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계약금액을 감액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7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감액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단,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감액 환수 통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대학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기한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증빙자료의 사후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7조(선금지급) ①대학은 계약자의 선금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학 사정으로 선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 지급하고자 할 경우 그 적용범위 및 선금지급 조건 등은 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31-8('03. 4.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또한 계약자는 대학이 요구하는 제반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지급) ①대학은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찰참가제한) 대학은 계약자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함에 있어 납품검사 불합격된 사실이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수의계약시 당일포함) 과거 1년 동안에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시담에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소송의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대학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지체상금 면제의 범위) 본 계약에 있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4호의 지체상금 면제범위는 대학의 사정에 의해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로 적용한다.

제13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4.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5. 물품구매입찰유의서
6. 사양서(규격서 및 시방서, 보완규격 포함)